

우피유래 젤라틴·콜라겐 사용 가공식품 수입조건 변경고시

수입재개 품목 고시(2011.7.22)와 관련되어 우피유래 젤라틴·콜라겐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(식품첨가물, 건강기능식품 포함)의 수입조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대상제품 : BSE 관련 36개국의 우피유래 젤라틴·콜라겐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, 건강기능식품
- 확인사항 : 수출국정부증명서¹⁾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제조시설 여부
- 기 타 : BSE 관련 36개 이외 국가의 우피유래 젤라틴콜라겐 사용 제품 수입 시 수출국정부증명서²⁾

1) 수출국정부증명서 증명(기재)내용(36개국 대상)

- ① 해당제품의 원료는 가축전염병 우려가 없는 건강한 가축에서 유래하였고 동 원료는 원피 및 가죽에서만 유래하였음
- ② 해당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피 및 가죽은 한국의 관련규정에 따른 특정위험물질(SRMs)과 교차오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집, 운반, 보관 및 처리되었음
- ③ (콜라겐 제조공정) 콜라겐의 제조원료는 세척(washing), 산 또는 알칼리를 사용한 pH 조정(adjustment)과 뒤이어 1회 이상 헹구기(rinses), 여과(filtration) 및 압출(extrusion)이 포함된 처리를 받았거나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가공방법으로 처리되었음
- ④ (젤라틴 제조공정) 젤라틴의 제조원료는 산 또는 알칼리 처리에 뒤이어 1회 이상 헹구기(rinses)를 거쳤으며, pH는 그 후에 조정되어야 함. 젤라틴은 1회 이상이 연이은 가열과 뒤이어 여과 및 열처리 방법에 의한 정제(purification)에 의해 추출(extracted)되었음

2) 수출국정부증명서 증명(기재)내용(36개 이외 국)

- ① 해당 제품의 원료는 가축전염병 우려가 없는 건강한 가축의 원피 및 가죽에서만 유래하였음

□ 사례별 제출 서류 및 확인사항

수입사례(가정)	원료 생산국	최종제품 수출국	제출 및 확인 서류
• 호주산 콜라겐 또는 젤라틴을 사용한 독일 초콜릿바	36개 이외 국가	BSE 관련 36개국	수출국정부증명서 2)
• 오스트리아 젤라틴을 사용한 독일 초콜릿바	BSE 관련 36개국	BSE 관련 36개국	수출국정부증명서 1)* 또는 식약청장이 인정하는 제조시설 생산제품
• 브라질산 젤라틴(캡슐제조)을 이용한 호주산 건강기능식품	BSE 관련 36개국	36개 이외 국가	수출국정부증명서 1)* 또는 식약청장이 인정하는 제조시설 생산제품
• 아르헨티산젤라틴 사용한 미국산 사탕(팝타르츠)류	36개 이외 국가	BSE 관련 36개국	수출국정부증명서 2)
• 한국산 젤라틴 원료(또는 빈캡슐)를 사용한 호주산 건강기능식품(캡슐제품)	36개 이외 국가	BSE 관련 36개국	수출국정부증명서 2)

* 사용한 원료가 젤라틴인 경우 수출국정부증명서상 ①~④번 내용 증명(기재), 콜라겐인 경우 ①~③번 내용 증명(기재)

□ BSE 관련품목 수입금지국(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-307호)

그리스 · 네덜란드 · 덴마크 · 독일 · 룩셈부르크 · 벨기에 · 스페인 · 아일랜드 · 영국 · 이탈리아 · 포르투갈 · 프랑스 · 노르웨이 · 루마니아 · 마케도니아 · 보스니아-헤르체고비나 · 불가리아 · 슬로바키아 · 슬로베니아 · 알바니아 · 세르비아 · 몬테네그로 · 크로아티아 · 폴란드 · 헝가리 · 오스트리아 · 스웨덴 · 핀란드 · 스위스 · 리히텐슈타인 · 체코 · 일본 · 캐나다 · 이스라엘 · 미국 · 브라질